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형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헌법재판소는 2019. 4. 11.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,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제1항 중 ‘의사’에 관한 부분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·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, 2020. 12. 31.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(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).

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‘의사’에 관한 부분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(안 제270조의2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형법 제269조제1항, 제2항 및 제270조제1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기간 : 2020. 10. 7. ~ 11. 16.(40일간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0조의2(낙태의 허용요건) ① 제269조제1항,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

② 제269조제1항,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, 그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.

1. 강간 또는 준강간(準強姦)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
2.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
3.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
4.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③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의 지

속,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70조의2(낙태의 허용요건) ①</u> <u>제269조제1항, 제2항 또는 제</u> <u>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</u> <u>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</u> <u>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</u> <u>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</u> <u>② 제269조제1항, 제2항 또는 제</u> <u>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24주</u> <u>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</u> <u>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</u> <u>다.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</u> <u>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</u> <u>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, 그 때</u> <u>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1. 강간 또는 준강간(準強姦) 등</u> <u>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</u> <u>2.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</u> <u>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</u> <u>3.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</u> <u>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</u> <u>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</u>

	<u>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</u> <u>4.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</u> <u>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</u> <u>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</u> <u>우려가 있는 경우</u> <u>③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</u> <u>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</u> <u>의 지속, 출산 및 양육에 관한</u> <u>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</u> <u>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</u> <u>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</u> <u>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</u> <u>추정한다.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형사법제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712